

의안번호	2204487
의 퇴 인	이정문의원
회 답 일	2024. 11. 25.
추 계 번호	24D4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안 제12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선거일 등에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늘어난 선거기간에 상당하는 수준의 금액을 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4억 5,700만원(연평균 2억 9,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대통령선거일 등에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 인상(안 제121조제4항 신설)	-	-	1,457	-	-	1,457	291

주: 1. 대통령선거일 등에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 인상(안 제121조제4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직전 대통령선거일에 5곳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사례, 직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비용보전액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1조제4항(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신설	보궐선거등이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1항 각 호 ¹⁾ 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늘어난 선거기간에 상당하는 수준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의무규정

1)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이하 생략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21조제4항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직전 대통령선거일에 5곳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사례, 직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비용보전액 등을 활용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27년 대통령 선거일에 5곳의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늘어난 선거 기간에 상당하는 수준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고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본 추계에서는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대통령선거일에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추정하여 차액을 산출하고, 선거구 수, 평균 후보자 수, 선거비용보전율을 곱하여 산출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2.1%	2.0%	2.0%	2.0%	2.0%

- 2027년 대통령선거일에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현행 법과 개정안에 따른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의 차액은 1억 7,600만원으로 추정
 - 직전 국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인 수, 후보자 수 등을 활용하여 선거기간 1일에 선거인 1명에게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90원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 선거기간은 14일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 1,800만원, 지역구 당 평균 선거인 수는 173,890명³⁾
 - 선거기간 1일에 선거인 1명에게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90원(=2억 1,800만원 ÷ 173,890명 ÷ 14일)
 -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선거기간 1일에 선거인 1명에게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2027년 기준 109원으로 추정
 - 2027년의 지역구 당 평균 선거인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12)를 활용하면 179,440명으로 추정
 - 선거기간 1일에 선거인 1명에게 소요되는 선거비용, 평균 선거인 수, 선거기간을 곱하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출하면 현행법 기준 2억 7,400만원, 개정안 기준 4억 5,000만원으로 차액은 1억 7,600만원
 - 현행법 기준: 2억 7,400만원(=109원×179,440명×14일)
 - 개정안 기준: 4억 5,000만원(=109원×179,440명×23일)
- 앞서 추정한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의 차액, 5개 선거구, 평균 후보자 수 6명, 평균 보전율 27.6%⁴⁾를 적용
- 추계결과, 대통령선거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인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4억 5,7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가재정소요: 14억 5,700만원(=1억 7,600만원×5개 선거구×후보자 6명×보전율 27.6%)

3)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 수 43,994,247명을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지역구 당 평균 선거인 수는 173,890명

4)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총 1,118명,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2억 1,800만원으로 총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2,437억 2,400만원(=2억 1,800만원×1,118명)이었으나 선거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출된 선거비용보전액은 671억 5,300만원으로 평균 보전율은 27.6%로 추정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직전 대통령선거일에 5곳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사례, 직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비용보전액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